

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「미술진흥법」(2023.07.25. 제정, 2024.07.26. 시행)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, 안 제4조).
- 미술진흥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5조)
 -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,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관련 사업 규정(안 제6조)

- 충청북도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 창작·전시, 전시·보존·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,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.

○ 지원(안 제7조)

-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미술진흥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민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는 조문으로,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고,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「미술진흥법」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,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는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, 미술진흥계획을 「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.
- 안 제6조에서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 창작 지원 사업, 미술 전시 지원 사업,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

규정함으로써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, 안 제7조 미술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미술진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미술진흥법」을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지역미술 정책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미술진흥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견이 없음.